

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[2016. 6. 10 조례 제683호]

일부개정 2019. 12. 26 조례 제 909호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농촌체험관광 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지역의 역사·문화, 자연경관, 농수산물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·휴양·숙박·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
 - 나.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·가공·판매
2. “농촌체험관광 마을”이란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(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.
3. “1사1촌 자매결연”이란 1개 이상의 마을이 1개 이상의 기관·기업·단체 또는 그 기관·기업·단체의 소속 부서와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촌체험관광 마을
2.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

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

가.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

나. 전문 인력 육성

다. 그 밖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2. 1사1촌 자매결연 추진

3. 청소년 등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·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 교육(이하 “농촌체험활동”이라 한다)

4.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전문 인력의 육성 등)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은 자체적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)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마을과 기관·기업·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,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농촌체험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편의시설 확충, 노후시설 개·보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과 소속 행정기관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장려하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) ① 군수는 관내 또는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교류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·자문위원회)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·자문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
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「증평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 <개정 2019. 12. 26>

③ 삭제 <2022. 12. 29>

제9조(지도·감독 및 평가)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지도·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관광 마을에는 포상을 할 수 있고,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전문가의 자문 등)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조례 제909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
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